

참고 1 **일상회복 추진 따른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(출결 등) 기준**

□ **수업 운영(출결) 기준**

※ 학교 일상단계 기준(개강일 현재)

구 분	해당 기간 수업 운영		대면수업 가능 시기	병가(또는 공결) 관련 증빙서류
	담당 교원	학생(본인)		
의심 증상	원격수업 또는 휴강(보충수업 지정)	병가 또는 원격수업 참여	증상이 소실되거나 신속항원검사 등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	진단서, 소견서 등
접촉자* (수동감시자)	대면수업	대면수업 참여 ※ 신속항원검사 등에 필요한 시간만 공결 허용	신속항원검사 등 검사 결과 ‘음성’ 확인 이후	보건당국 발급 서류 등 (문자메시지, 음성확인서 등)
확진자 (7일간)	<경증·무증상> 원격수업 또는 휴강(보충수업 지정) <중증> 강의대체자 지정	<경증·무증상> 병가 또는 원격수업 <중증> 휴학 권고	격리기간 해제 후 ※ 교원 또는 학생이 원할 경우 원격수업(미러링 수업) 가능	보건당국 발급 서류(문자메시지 등)

* 가족이 아니지만 동거인이 확진되거나, 학과 자치활동 또는 수업 특성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

※ **접촉자(수동감시자)의 공결(대체출석) 처리 절차**

- (수동감시자 또는 가족이 아니지만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) 신속항원검사 등에 필요한 시간(4시간 이내) 공결(대체출석) 처리 가능하며, (병원 등)신속항원검사 결과 자료로 관련 증빙자료 활용 (PCR검사인 경우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)
- (학과장이 검사를 요청한 경우) 신속항원검사 등에 필요한 시간(4시간 이내) 공결(대체출석) 처리 가능하며, 학과장 명의 공문으로 관련 증빙자료 활용 (PCR검사인 경우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)